



문서번호	사회복지과-34455
결재일자	2014. 12. 3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700호

주무관	자원봉사팀장	사회복지과장	주민생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이지은	정영호	남강우	代최성연	유재룡	12/31 정원오
협 조					
	자원봉사센터장 김인하				

자원봉사 활동지원 활성화 계획

자원봉사 활동지원 활성화 계획

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지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문제 해소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

I

관련근거
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8조제5항(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
⇒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

II

추진방향

-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권장 지원
- 기업체 또는 단체의 사회공헌 참여로 자원봉사 활성화
-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발적인 지정기부금 적정 처리

III

자원봉사센터 현황

■ 성동자원봉사센터 현황

- 운영형태: 구 직영(센터장1, 직원3명), 1997.10.1. 설치
- 봉사자 등록현황: 70,376명 (2014. 11월말 기준)
 - 남 29,203명, 여 41,173명
 - 연 활동인원 69,615명 (2014년도 1회 이상 봉사자 11,572명)
- 등록단체 수: 120개 단체, 회원 수 7,257명
- 활동분야: 지역발전, 사회복지, 문화, 환경, 교육, 재해 구조 등

■ 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

○ 구 직영 센터 : 17개 구

- ▶ 종로구, 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강서구, 구로구 금천구, 관악구, 송파구, 강동구

○ 위탁운영 센터: 8개 구

- ▶ 중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서초구, 강남구, 용산구, 노원구, 동작구

■ 타구 자원봉사 발전·운영 위원회 비교 (구별현황 붙임1)

○ 자원봉사 발전위원회

- 위원회 운영하는 구: 3개구

- ▶ 성북구(위원장 부구청장), 관악구(위원장 구청장), 강남구(위원장 위원 중 호선)

- 위원회 운영하지 않는 구: 22개구

- ▶ 8개구는 조례상 규정 있으나 미 구성하고, 14개구는 조례규정 없거나 삭제

○ 자원봉사 운영위원회

- 위원회 운영하는 구: 17개 구

- ▶ 중구, 광진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, 은평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

- 위원회 운영하지 않는 구: 8개 구

- ▶ 7개구는 조례상에 규정 있으나 구성하지 않고, 강남구는 조례상 규정 없음

○ 비교 검토결과

-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3개구에서 운영하나 활성화가 미미하며, 22개구는 운영하지 않음

-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는 17개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, 관련 법률 및 조례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⇒ 우리 구 적용 방안

현재 우리 구는 자원봉사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

“자원봉사 운영위원회”를 설치하여 자원봉사 활동 지원필요

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

■ 위원회 구성

- 명 칭: “성동구 자원봉사 운영위원회”
- 구성인원: 20명 이하
- 구성위원: 자원봉사단체 대표 과반수 이상, 소관 국장 및 과장 당연직
- 위원임기: 2년 (연임 가능)
- 임원선출: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(민간인)
간사 자원봉사센터장
- 위 축: 구청장

■ 위원회 기능(규칙 제7조)

-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
-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센터운영 예산,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집행 등
-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■ 위원회 운영

- 시기: 분기별 개최 (필요시 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위한 위원 소집)
- 회의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
- 의결: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
- 기타: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

■ 위원회 위원 구성

-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
- 지역 사회에 자원봉사활동 우수 참여자
-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 기업체 및 단체 (내역 붙임2)
 - 봉사활동 단체 및 기업체에 대한 참여의사 확인: 2014.12.~2015.1.
 -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명단 확정 및 위촉장 수여: 2015.2.

2

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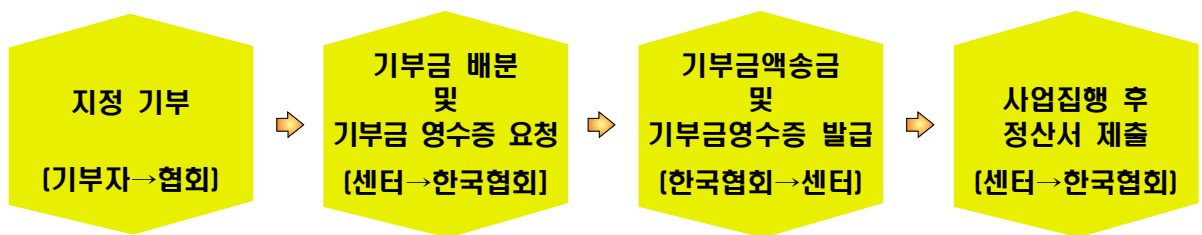
■ 개인(단체) 및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

- 다양한 수요처 발굴과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
-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로 참여유발 촉진
- 관외 기업체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안내 유치
-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지정기부금품 처리

■ 사회공헌 활동에 따른 자발적인 기부금품 처리

-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를 통한 기부금 처리
 - ※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제5조(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.접수제한 등)-국가나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.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.출연하여 설립된 법인.단체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
-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(사단법인 2000.12.20.설립)
 -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간 정보제공과 협력체계 구축
 -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기부금품모집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업무 대행 (정관 제46조, 특별회계)

■ 기부금품 처리 흐름도



※ 기부물품은 지역센터에서 센터협회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(기부자→지역센터 기탁)

※ 개인은 센터협회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일괄 등록

- 후원금의 경우 1% 총당비용 공제(인건비, 송금수수료, 우편비 등), 2012.6.8. 총회 의결사항

※ 타 법률 모집비용 총당 비율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: 15%,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: 10%, 재해구호법 제27조: 2%

- 우리구의 한국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: 2014.11.28. 회원 가입 완료,
입회비 10만원, 월 회비 5만원

V

기대효과

-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통한 봉사활동 지원의 효율성 향상
- 운영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권장과 지원 전개
- 기업체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

VI

향후계획

- 운영 위원회 참여의사 확인 및 확정: 2014.12.~2015.1.
-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(예정): 2015.3.
 - 임원진 선출 및 위촉장 수여
 - 위원회 참석 수당은 지급여부는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
 - ※ 수당지급 의결 시 관련 규칙에 지급근거 마련하여 지급
- 운영위원회 운영 1년 성과분석 후 도출되는 문제점 보완: 2015.12.

- 붙임 1. 구별 자원봉사 발전·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부.
2. 우수 자원봉사자(단체) 및 기업체 현황 1부. 끝.